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2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장애인의 배우자 가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하며,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정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을 증명서류로 추가함(안 제3조).
-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 다.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8조).
- 라.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변경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함(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2. 27.~3. 18.)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p> <p>1.2.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p>	<p>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제3항-----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⑤ ----- 제3항----- ----- ----- ----- -----</p>

현행	개정안
<p>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u>같은 법 제146조제2항</u>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u>같은 법 제146조제2항</u>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p>	<p>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 ----- ----- ----- ----- ----- ----- <u>같은 법 제146조제3항</u>----- ----- -----.</p> <p>② ----- ----- ----- <u>같은 법 제146조제3항</u>----- ----- -----.</p>
<p>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p>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p>	<p>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p> <p>----- ----- ----- ----- -----</p>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요구<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한옥의 경우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조례로 한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미반영</u><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예고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자치구 조례 등 별도 개정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2133-3357)